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8. 10. 23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: 2018년 10월 12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18년 10월 19일

라. 상정일자: 제21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1차 행정위원회(2018. 10. 22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감사담당관 송주용)

가. 제안이유

- 구민과의 소통 창구 마련을 위한 영등포구 구민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의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인권정책에 대한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인권지킴이단 운영 규정 신설(안 제7조의2)
  - 인권정책의 수립·시행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인권지킴이단을 구성·운영
  - 인권침해·보호 등의 모니터링, 구민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업 참여 등 인

### 권지킴이단 역할 규정

- 인권지킴이단은 인권활동 경력이 있거나 소정의 인권교육을 수료하는 등 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40명 이내로 구성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최광목)

-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인권지킴이단 구성을 통해 구민참여 활성화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의 보장과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임.
- 개정안의 주요내용은,
  - 안 제7조의2 제1항에서 인권정책의 수립·시행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“영등포구 구민인권지킴이단”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,
  - 제2항에서 인권침해·보호 등의 모니터링 등 인권지킴이단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며,
  - 제3항에서 인권지킴이단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,
  - 제4항에서 인권지킴이단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,
  - 제5항에서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음.
- 검토 결과, 주민의 직접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지역 내 인권 침해에 대한 모니터링과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인권 차별 사례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구에 인권 정책을 제안하는 등 주민 참여 속에 인권의 가치가 보다 존중받는 지역 공동체를 위해 구민인권지킴이단 설치·운영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, 상위법 위반 등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짐.

### 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3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10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구의 인권정책 수립·시행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민과의 소통을 위하여, 영등포구 구민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인권지킴이단 운영 규정 신설(안 제7조의2)

- 1) 인권정책의 수립·시행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인권지킴이단을 구성·운영
- 2) 인권침해·보호 등의 모니터링, 구민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업 참여 등 인권지킴이단 역할 규정
- 3) 인권지킴이단은 인권활동 경력이 있거나 소정의 인권교육을 수료하는 등 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40명 이내로 구성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원안동의

라. 입법예고(2018. 9. 20. ~ 10. 10. / 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인권정책의 수립·시행에  
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  
민인권지킴이단(이하 “인권지킴이단”이라 한다)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인권지킴이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인권침해·보호 등의 모니터링
2. 인권정책 제안 및 인권 네트워크 구성, 동아리 활동
3. 구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
4. 인권교육 등 구민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업 참여
5.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구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인권지킴이단은 인권활동 경력이 있거나 소정의 인권교육을 수료하는 등  
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40명 이내의 구민으로  
구성한다.

④ 구청장은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 
지원할 수 있다.

⑤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  
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&lt;신   설&gt;</p>	<p><u>제7조의2(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)</u></p> <p>① <u>구청장은 인권정책의 수립·시행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민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인권지킴이단(이하 “인권지킴이단”이라 한다)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인권지킴이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인권침해·보호 등의 모니터링</u></li> <li>2. <u>인권정책 제안 및 인권 네트워크 구성, 동아리 활동</u></li> <li>3. <u>구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</u></li> <li>4. <u>인권교육 등 구민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업 참여</u></li> <li>5. <u>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구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</li> </ol> <p>③ <u>인권지킴이단은 인권활동 경력이 있거나 소정의 인권교육을 수료하는 등 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40명 이내의 구민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④ <u>구청장은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</u></p>

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⑤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